

kiri Weekly

2016.4.4. 제378호

주간 포커스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와 노후소득

이슈 분석

보험회사의 부동산 PF 증가와 위험관리
자녀 없는 부부가구와 의료비지출

글로벌 이슈

보험산업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활용 가능성
블록체인 기술이 보험산업에 주는 영향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주간 포커스와 이슈 분석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와 노후소득

오승연 연구위원

요약

-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의 차이는 노후소득의 주요 원천인 연금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사망률 개선이 주로 고소득층에서 일어나는 경우 노후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
- 소득계층별 50세 기대여명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920년생과 1940년생의 50세 기대여명을 비교한 결과, 20년 동안 전체 남성 평균 기대여명은 26.8세에서 31.6세로 4.8세 증가하였음.
 - 하지만 소득계층별로는 남성 상위 10%의 경우 50세 기대여명이 8.7세 증가한 반면, 하위 10%의 기대여명은 1.7세 증가에 그침.
- 소득계층별로 기대여명의 격차는 다양한 측면에서 생애연금소득(lifetime benefit)에 영향을 미침.
 - 기대여명의 차이로 저소득층의 연금수급기간이 고소득층의 연금수급기간보다 짧아지게 되어 생애연금 소득의 격차가 커지게 됨.
 -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수익비를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기대여명의 격차를 반영하면 실질적인 수익비 차이가 줄어들게 됨.
 - 소득계층별로 연금수급기간이 다른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게 됨.
-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의 심화는 건강 불평등과 노후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가 더욱 높아짐을 의미함.
 -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건강생활습관 개선과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건강 형평성 제고 정책은 간접적으로 소득 불평등의 개선효과도 얻을 수 있는 비용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노후소득 형평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됨.

1. 검토 배경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급격히 증가하여 1970년에 61.9세였던 것이 2014년에 82.4세가 되었다. 그런데 평균수명의 증가는 인구 전체에서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인구 집단별로 사망률 하락의 정도는 이질적이다. 대표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차이는 2014년 현재 6.5세이다.¹⁾ 성별 외에도 사회계층별로 사망력과 기대여명이 이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 소득 불평등 심화와 부의 대물림 현상이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득 불평등도는 근로기 연령대보다 고령층에서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기대여명 격차는 연금소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는 노후 연금소득 불평등과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교육, 직업, 소득이 있는데, 소득계층별 평균수명 격차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노후 소득의 주요 원천인 연금소득이 근로기 생애소득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2.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들을 소득계층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그런데 소득계층을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소득의 변동성을 고려해 볼 때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근로기의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분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국민연금이 늦게 도입되었고 데이터 축적의 역사가 짧아 생애소득과 사망력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장기데이터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가 연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Bosworth, Burtless and Zhang(2016)²⁾은 1920년생과 1940년생의 기대여명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하였는데, 20년 동안 전체 남성 평균 기대여명은 26.8세에서 31.6세로 4.8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계층별로는 최하위 10%의 경우 기대여명 증가가 1.7세(1920년생 24.3세, 1940년생 26.0세)인 반면, 최상위 10%는 8.7세(1920년생 29.3세, 1940년생 38.0세)나 증가하였다. 이는 사망률 개선이 주로 상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소득계층 간 기대여명 격차는 노후 연금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1) 통계청, 『2014년 생명표』.

2) Bosworth, Burtless and Zhang(2016), *Later Retirement, Inequality in Old Age, and the Growing Gap in Longevity Between Rich and Poor*, Brookings Institute.

3. 기대여명 격차와 연금소득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연금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연금수급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기대여명의 차이로 저소득층의 연금수급기간이 고소득층의 연금수급기간보다 짧아지게 된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생애연금소득(lifetime benefit)의 차이는 기대여명 격차를 고려하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라 연금수급기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이 연구는 미국의 공적 연금인 OASDI(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기 생애소득을 추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소득 10분위로 분류하고 각 소득계층의 기대여명을 반영하여 연금수급기간을 분석하였다. 남성의 경우 1920년생 최하층과 최상층의 연금수급기간은 각각 16.6년과 18.8년이었고, 1940년생은 17.8년과 26.0년이었다. 연금수급기간의 격차가 2.2년에서 8.2년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생애연금소득의 격차도 벌어졌다. 최상층의 생애연금소득이 최하층과 비교해서 1920년생의 경우 2.6배였는데 1940년생은 3.3배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여명 외에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교육수준, 혼인상태, 장애여부 등)을 통제한 결과다.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차이는 연금소득의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에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어 납부한 연금보험료 대비 지급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수익비 측면에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후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전가량 즉, 납부한 연금보험료보다 더 받는 연금액의 절대액 측면에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기대여명의 차이를 반영하면 저소득층에 유리한 수익비 차이는 줄어들게 되고 고소득층에 유리한 후세대 부담전가량 차이는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정림·이항석(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⁴⁾, 소득계층을 통합하여 기대여명을 적용했을 때의 수익비와 비교해서 저소득층의 수익비는 2.68~4.83% 정도 낮아지고, 고소득층의 수익비는 2.07~4.98% 정도 높아진다. 또한 후세대 부담전가량은 저소득층이 약 3.00~5.74% 정도 낮아지는 반면, 고소득층은 2.53~9.68%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국민연금 도입기간이 짧아 미국과 같은 장기 자료를 사용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수익비와 후세대 부담전가량이 소득계층별로 달라지는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정책의 영향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 노후소득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국민연

3) Bosworth, Burtless and Zhang(2016).

4) 한정림, 이항석(2014),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차이를 반영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 분석」, 『응용통계연구』, 27(2); 동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을 크게 상·중·하위 세 계층으로 구분하여 60세 기준 기대여명을 반영하여 수익비, 후세대 부담전가량을 계산하였음.

금의 수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여왔다.⁵⁾ 모든 소득계층이 동일한 기간만큼 연금수급 기간의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기대여명이 더 짧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의 생애연금소득 감소가 더 커서 생애연금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다.

4. 기대여명 격차의 원인

그렇다면 이렇게 소득계층에 따라 기대여명의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기대여명의 격차는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암을 예방하기 위한 암 검진율을 살펴보면, 최상위와 최하위 소득계층 간 차이는 위암 4.1%p, 간암 10.4%p, 대장암 10.0%p에 이른다.⁶⁾ 또한 동일한 중증상태인 암환자라 하더라도 소득계층별로 의료이용률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생존율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⁷⁾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비중도 하위 소득계층이 상위 소득계층보다 10배나 더 높다.⁸⁾

사회경제적 계층과 기대여명의 관련성을 매개

하는 것으로 건강행태 위험(behavioral risks)을 들 수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생활에 대한 경각심이 높을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흡연, 음주, 신체활동과 같은 건강행태가 사망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⁹⁾

5. 시사점

소득계층 간 기대여명 차이는 국민연금의 생애연금소득 격차를 증가시키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노후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대여명 격차의 심화는 건강 불평등과 노후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건강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규명하는 노력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먼저 사회경제계층 간 건강 불평등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밝히고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제까지 건강정책은 개개인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집단 간 건강 형평성 제고 측면은 부족하였다.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건강생활습관 개선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는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국민 전체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⁰⁾

9) 김혜련·강영호·여지영(2014), 『건강위험요인과 사망의 관련성에 대한 종단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노령연금의 경우 1953~1956년생의 수급개시연령은 61세이나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임.

6) 김동진(2015), 「우리나라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 불평등」, 『보건·복지 Issue & 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Yoon, Tae Ho, et al.(2011), "Inequalities in medical care utilization by south korean cancer patients according to income: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41(1).

8) 김동진(2015) 참조.

향후 노후소득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소득 계층 간 기대여명 격차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연과 같은 정책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기대여명 격차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후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민연금 연금액을 결정하는 산식에 소득계층별로 기대수명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액 자료를 가지고 근로기간 총 생애소득을 추정하기에는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도 무리가 있다. 또한 연금 수령기에 가까워지면서 소득액을 낮춰 이후 연금 수령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도덕적 해이 유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국민연금액 산정공식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도록 A값과 B값에 가중치를 달리 주거나¹¹⁾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차원에서 소득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kiri**

10) 우해봉(2011), 「소득과 기대여명」, 『보건사회연구』, 31(2).

11) 국민연금액 산정공식에서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의미하며, B값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자기소득의 평균액을 의미함.